

경영위원회 규정

제 정 : 2022. 5. 4

코오롱이앤피 주식회사

1. 적용범위

이 규정은 코오롱이앤피 주식회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한 경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2. 목적

이 규정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책임과 권한

3.1. 위원회

- ① 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의 위임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.
 - (1)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(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3)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(4)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4. 업무절차

4.1. 위원회의 구성

4.1.1. 구성

- ① 위원회 위원은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(이하 위원장)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④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퇴임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.

4.1.2. 감사의 출석 등

①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②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4.2. 회의

4.2.1. 위원회의 소집

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,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이 유고 시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는 사내 임원 서열 순에 따른다.

4.2.2 소집절차

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(會日)을 정하고, 그 1일 전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하시(何時)라도 회의할 수 있다.

4.2.3. 결의방법

①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원장과 위원만이 의결권이 있다.

② 감사는 의결권이 없으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과반수로 한다.

4.2.4. 보고의무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 및 보고하여야 한다.

4.2.5. 의사록

위원회 의사내용 및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비치한다.

4.2.6. 감사

- ① 경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감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지원을 담당한다.

5. 관련표준

- (1) 코오롱이앤피 이사회 규정

6. 첨부 내역

- (1) [첨부1] 개정이력

7. 부칙

7.1. 시행일

이 규정은 2022년 5월 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7.2. 승인권자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